

행위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10일	
행위 구분		[] 용도변경 [] 경미한 파손·철거 [] 경미한 증축 [] 경미한 증설			
신청인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단지 개요		단지명		세대수	
입주자 대표회의	명칭		회장 성명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행위 대상 시설 개요	시설 종류	[] 공동주택 []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[] 부대시설,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			

행위 내용				
구분 시설별	① 행위 전		② 행위 후	
	용도	면적(㎡)	용도	면적(㎡)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첨부서류

1. 용도변경의 경우
- 가.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
- 나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- 다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2. 파손·철거의 경우
- 가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3.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
- 가.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(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)
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유의사항

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작성방법

1. ①·②의 행위 전·후의 용도란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·제14호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·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.
2. ①·②의 행위 전·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.
3.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